배상명령신청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횡령·배임증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(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: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)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4. 2008고합1413,2009고합87(병합),304(병합),309(병합),411(병합),2009초기30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황현덕외 1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박해성외 6인

【배상신청인】

【배상신청대리인】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김은권

## 【주문】

## ]

1. 피고인 1

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.

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.

2. 피고인 2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.

3. 피고인 3

피고인을 벌금 1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4. 피고인 4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"배상명령신청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..." (판례, 2008고합1413,2009고합87(병합),304(병합),309(병합),411(병합),2009초기30)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